

『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및 사망위로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,
- 지원대상을 지급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둔 모든 참전유공자로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노후를 지원함으로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 변경(안 제3조)
 - 구미시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
→ 구미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변경
-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액 변경(안 제4조)
 -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지급 →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
 -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→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
4. 참고사항
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및 사망위로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,
- 주소지 거주 기준을 완화하여 부득이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는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 3조에 지원대상 변경하여 구미시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를 구미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변경
- 안 제 4조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에서 5만원,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임.

○ 검토결과

-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주소이전과 관련해서 관련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,
- 타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도록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상향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예우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.